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9.(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21. 1. 0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21. 1. 12.
-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1월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민우 복지국장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사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신규 가족단위 시설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을 명시(안 제9조)
-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
(안 제9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3)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연장지 중 가족정원장 사용기간을 90년으로 신설(안 제21조 단서 신설)
- 신규 봉안시설 별빛당 명칭 신설(안 별표 1)
-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에 관외주민 포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다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 제안사항 수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시에서는 인천가족공원 ‘가족’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안식처’로서 가치를 부각하여 새로운 형태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용 활성화로 장사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반환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조성묘지 중 개장 또는 화장으로 반환된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시설로 재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음¹⁾.

- 가족구성과 혼인문화의 변화 등으로 선대 조상의 묘지, 봉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및 편리함 추구,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 및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미래 자연장 수요가 더욱 증가 예상되며, 정부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²⁾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장사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가족공원 시설 특성과 조성 방향에 적합한 ‘가족형’ 시설 확대의 필요성 등으로 신규로 운영하는 가족단위 장사시설 종류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의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시설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책정, 신규로 개장한 봉안시설 명칭 신설과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기간의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조성묘지의 사용권자는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분묘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조성묘지 중 반환·개장된 분묘를 가족봉안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3월) 中
“2022년까지 자연장 이용률 30% 달성 목표”

- 또한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 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하여 가족 유대를 지향하는 장사시설로 가족공원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³⁾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설묘지 등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사목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사무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구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차. 생략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 안 제9조제1항에서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
- 새로운 형태의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족공원의 시설 특성과 조성 방향에 적합한 ‘가족형’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정원형 암석장 및 봉안담 시설 일부를 가족형으로 전환하여 신규로 조성한 가족단위 시설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의 명칭을 명시하였음.

<인천가족공원 신규 조성 시설 현황> (2020.06.30.기준/ 복지국 노인정책과)

봉 안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치능력: 4개소 10,942기 • 운영개시: 2017.1.1. 		
구분	안치능력	안치실적
회랑형	3,990	414
봉안담(1)	1,140	142
봉안담(2) (가족봉안담)	1,696	-
봉안담(3)	4,144	-
※ 봉안담(1)은 부부형		



<회랑형 봉안담>



<봉안담 I>



<봉안담 II>



<봉안담 III>

정원형 암석장

- 면 적: 1,942m²
- 안치능력: 756기 (126개소×6기)

구분	1단계 (하늘길암석장)	2단계 (가족정원장)
면적	1,022m ²	920m ²
안치능력	70개(420기)	56개(336기)
위치	금마총 주변	상가동 뒷편
조성완료	'17.10.31.	'18.07.31.



<정원형 암석장 1단계>



<정원형 암석장 2단계>

※ 조성묘지 현황

(2020.12월말 기준, 단위:기)

구 분	계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운영기수	334	42	292

- 안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안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안 제19조의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안 제2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안 제20조의3(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
: 명칭변경 (가족봉안시설 → 가족장사시설)

- 안 제9조제3항의 시설명칭, 제17조제2항의 시설명칭, 안 제19조의2의 단서조항 시설명칭, 안 제20조의 시설명칭, 안 제20조의3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명칭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임.
- 봉안에만 국한되었던 의미의 현재의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장사시설’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0조(방안시설 안치기간),

안 제21조(방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방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연고가 있는 유골은 사용권자로부터 방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5년간 방안시설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월 7일 개정된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⁵⁾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당초10년 → 변경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 안 제21조의2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제목개정 2015. 7. 20.]

- 2020년 10월부터 운영된 ‘정원형 암석장’ 2단계 56기(1개당 6위, 총336위)를 가족형 시설(가족정원장)로 전환하는 것으로 3세대 사용이 가능한 가족방안시설과 동일한 사용기간(90년)⁶⁾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그 밖에 사항(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3)

- 안 별표1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것으로 방안시설 중 ‘인천가족공원 별빛당⁷⁾’과 ‘인천가족공원 가족방안담’ 명칭을 신설하고, 자연장지 중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 명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방안시설 7개소 → 9개소, 자연장지 3개소 → 4개소

- 안 별표2에서는 동 조례 제8조제1항 관련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를 규정한 것으로 방안시설 중 ‘가족방안담(12위, 8위)’과 자연장지 중 ‘가족정원장(6위)’의 사용기간(90년) 및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2020년 제1회 물가대책위원회’ 안건 상정 결과 심의 의결⁸⁾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임.

▶ 방안시설 방안담 2개소 → 4개소, 자연장지 2개소 → 3개소

6) 안치능력 및 사용기간

구분	개인방안시설	가족 방안묘	가족 정원장(신규)
안치능력	1기(1위)	8위, 16위	6위
사용기간	30년	90년	90년(안)

7) 별빛당 : 안치규모 35,104기

8) 신규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 (안 제21조의2 및 별표 2) (단위 : 천원)

시 설 명	가족방안담(12위)	가족방안담(8위)	가족정원장(6위)
사용기간	90년	90년	90년
사용료·관리료	15,260	10,170	9,360

- 안 별표3에서는 동 조례 제9조 관련 사용료 감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민생규제혁신 공모과제』 제안 사항을 수용하여 관외주민 중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대상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관내주민 사망일 기준 만90세 이상자 감면금액(50퍼센트→100분의 50)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020년 민생규제혁신 공모사업 >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사업의 추진(2020. 2. 19. ~ 4. 10.)결과 제안된 사항을 수용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9)에 따라 현재 인천시 관내주민에게만 전액감면 적용하였던 사항을 장기등 기증자(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 제정취지와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별표2에서 규정한 ‘무연고자’ 10년 기간과 사용료 15만원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언급한 ‘무연고자’ 5년 및 전액면제사항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시에서 지원하는 무연고자에 대한 화장·봉안 등의 지원은 전액 무상이며, 별지에서 언급한 사용료 15만원은 기 조성된 묘지 등을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등이 개발시 무연분묘에 대해 업체가 부담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이하 “가족봉안시설”이라 한다)를”을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봉안시설”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을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봉안시설”을 각각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 설 묘 지	비조성 묘 지	인천광역시 중 구영중공설묘지	인천광역시 중 구 운북동	
		" 미추홀구주안공설묘지	" 미추홀구 주안동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연수구 옥련동	
		" 청학공설묘지	" 청학동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남동구 장수동	
		" 도림공설묘지	" 도림동	
		" 운연공설묘지	" 운연동	
		" 논현공설묘지	" 논현동	
		" 수산공설묘지	" 수산동	
		" 서 구경서공설묘지	" 서 구 경서동	
		" 원창공설묘지	" 원창동	
		" 가정공설묘지	" 가정동	
		" 검암공설묘지	" 검암동	
		" 원당공설묘지	" 원당동	
		" 불로공설묘지	" 불로동	
" 왕길공설묘지	" 왕길동			
" 대곡공설묘지	" 대곡동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 부평구 부평동			
조성 묘지	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부평구 부평동		
화 장 시 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 안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자 연 장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유 택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부 속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문화홍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 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봉안당	1인용	1기	30년	사용료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1기	30년	사용료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1기	30년	사용료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1기	30년	사용료 1,1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봉안담 (12위)	1기	90년	사용료 9,500,000	-	
					관리료 5,760,000	-	
	가족 봉안담 (8위)	1기	90년	사용료 6,330,000	-		
				관리료 3,840,000	-		
	가족봉안묘 (16위)	1기	90년	사용료 8,8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1기	90년	사용료 4,4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			
무연고		1기	10년	150,000원	-		
자연장지	수목장립 및 자연장	1기	30년	사용료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1기	30년	사용료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1기	90년	사용료 7,200,000	-		
				관리료 2,160,000	-		
유택산	산골	1기		10,000원	50,000원		

-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면적[㎡]	기 준	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	영상회의실	151.2㎡	1회 (1시간)	10,000원	15,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100분의50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100분의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외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100분의 30 감면

다. 자연장지 : 100분의 50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